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681호

산업통상부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산업통상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산업통상부 장관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노무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6급)	1명 (공인노무사)	채용일 ~ 2년	운영지원과(세종)

※ 채용기간 : (일반임기제) 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제74조(정년) 적용 제외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담당 업무
노무	**노무행정**	○ 비공무원 채용·보수·근로조건 등 인사·노무 관련 제반업무 수행 ○ 노동관계 법령 검토·개정사항 이행 및 노무 현안 대응 ○ 기타 조직 운영 관련 행정 수행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12.4.)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노무	자격증	○ **(자격증1)**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최종 시험('26. 12. 4.)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 **취득 전 경력 50% 인정**
		· **관련 분야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경력,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경력 등 노무관련 업무**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필수자격요건(공통 요건)' 및 '응시자격요건(자격증)에 충족하는 경우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2026.12.4.)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격증 취득 전 경력에 대해서는 50% 인정**

○ 경력의 범위

- '경력'의 인정 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연·월·일)**,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재)**, **근무형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직무분야 경력에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직무연관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업무분장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단,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적합한 증명서가 아닌 기관 날인이 없는 내부 출력자료 등은 증빙서류의 효력을 갖지 않음** (본인이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공고문상의 직무분야'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담당자명, 전화번호, e-mail)(**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도 제출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프리랜서, 인턴, 자원봉사, 단체활동'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로써, 사업운영사실·사업기간·소득발생내역·직무분야와의 연관성·활동 실적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증빙한 경우에 한해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소득금액증명서
→ **①,②,③,④ 모두 제출 해야 함**(7-다. 유의사항 참고)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6.11.12.) 기준]

우대요건	노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 경력 ○ 관련 학과* 학위 소지(학사 이상 학위등급별 차등 배점) * (관련전공) 법학, 행정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노동(노사)관련학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급수별 차등배점)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6.11.12.)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근무기간에 따른 연차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으며,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도 제출**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연·월·일)**,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재)**, **근무형태(전임/비전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직무분야 경력에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직무연관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업무분장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단,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적합한 증명서가 아닌 기관 날인이 없는 내부 출력자료 등은 증빙서류의 효력을 갖지 않음** (본인이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공고문상의 직무분야'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담당자명, 전화번호, e-mail)(**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학위]**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에 따른 차등 평가**(학사 이상 학위등급별 차등우대)**

※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위 등급이 있는 경우, 학위증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학위 과정 수료는 불인정)

- 관련 학위를 중복 제출한 경우, 유리한 점수에 해당하는 학위 1개만 인정

※ (관련전공) 법학, 행정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노동(노사)관련학

-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취득한 학위만 인정

- **[자격증]** 직업상담사 자격 보유에 따른 차등 평가 **(급수별 차등우대)**

※ 자격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자격 취소, 정지자 제외)

- 자격증을 중복 제출한 경우, 유리한 점수에 해당하는 자격 1개만 인정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하여도 응시자격요건 적격자가 10배수 이하인 때에는 형식심사만 진행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우대요건 : [붙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해당 분야의 업무 수행 전문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11. 2.(월) ~ 11. 12.(목)	'26. 11. 2.(월) ~ 11. 12.(목)	'26. 11. 18.(수) ['26. 11. 27.(금) (예정)]	'26. 12. 4.(금)	'26. 12. 15.(화) (예정)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응시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및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 게재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11. 2.(월) ~ 11. 12.(목),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방문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 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원서접수 마지막 날 제출할 경우, 채용담당자에게 전화로 접수 사실 통보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518호 인사팀 채용담당 **("산업부 임기제 응시원서(노무) 재중" 표기)**
- 문의처 : withlms@korea.kr, 044-203-5064
 - 문의사항 및 연락처 기재하여 메일로 우선 문의 (확인 후 회신 예정)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ㅇ응시원서 1부(* 정부수입인지 첨부: 7,000원)	ㅇ 별지서식 제1호
	ㅇ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ㅇ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ㅇ직무수행계획서 1부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총 6매 이내))	ㅇ 별지서식 제4호
	ㅇ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6호
	ㅇ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ㅇ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자격증 정지, 정지 예정자 포함)은 불인정	ㅇ 자격요건 / 우대요건 증빙서류
	ㅇ경력(재직)증명서 1부	
	ㅇ**대학교 이상** 학위증명서(졸업, 재학, 수료) 사본 각 1부 (위원 제척·기피 사유 확인용, 학사·석사·박사 증명서 모두 제출)	
	ㅇ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본**으로 발급 및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ㅇ경력 관련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ㅇ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취득 논문 사본 각 1부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우대요건 증빙) 1부	ㅇ 별지서식 제5호
	ㅇ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응시수수료 면제 해당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증빙 용도 제출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12. 16. ~ '27. 1. 15.(1개월 간)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7. 1월 예정** * 다만,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6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6호	81,945	41,288

※ 2027년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산업통상부 운영지원과(044-203-506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노무	노무행정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6급)	1명	운영지원과(세종)

주요 업무	○ 비공무원 채용·보수·근로조건 등 인사·노무 관련 제반업무 수행 ○ 노동관계 법령 검토·개정사항 이행 및 노무현안 대응 ○ 기타 조직운영 관련 일반 행정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노동관계 법령 분석·적용 능력, 인사·노무 현안 문제해결·조정능력, 기타 조직 운영 관련 행정 수행 능력
필요 지식	○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근로자 인사노무관리 및 행정관리 지식·경험 등 - 노동 관련 법령해석 및 자문, 사건대리, 교육 진행 등 ○ 노동관계 법령, 행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소양 ○ 노사분쟁·고충처리 및 노동관계 제도·정책에 관한 지식

응시자격요건	응시요건	**자격증**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자격증1)**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최종 시험('26. 12. 4.)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 취득 전 경력 50% 인정
			· **관련 분야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경력,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경력 등 노무관련 업무**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 경력 ○ 관련학과* 학위 소지(학사 이상 학위등급별 차등 배점) * **(관련전공) 법학, 행정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노동(노사)관련학**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급수별 차등배점)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기준**으로 판단하며, 자격증 취득 전 경력에 대해서는 50% 인정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공통>

- 응시자격요건「**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노무사 자격(국내자격증에 한함)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 **'자격증+경력' 요건 충족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6.12.4.예정)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취득 전 경력에 대해서는 50% 인정**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6.11.12.)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별지서식 제8호(예시) 참고)**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추가 제출**

<우대요건>

-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연차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에 대해서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취득 (학사 이상 학위등급별 차등우대)**

 *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위 등급이 있는 경우, 학위증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학위 과정 수료는 불인정)

 ** 관련 학위를 중복 제출한 경우, 유리한 점수에 해당하는 학위 1개만 인정

 ※ (관련전공) 법학, 행정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노동(노사)관련학

- **직업상담사 자격 보유 (급수별 차등우대)**

 * 자격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자격 취소, 정지자 제외)

 ** 자격증을 중복 제출한 경우, 유리한 점수에 해당하는 자격 1개만 인정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서식변경 금지,**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ㅇ 응시수수료 - 일반임기제 6급(6호)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2명의 미성년자가 확인되어야 함)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ㅇ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 해외학위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여 작성 및 추가 제출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 해외학위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여 작성 및 추가 제출

구 분	내 용
7.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ㅇ「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증빙 ㅇ (우대요건 해당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 취득 증빙 ※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자격증 정지, 정지 예정자 포함)은 불인정
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필수서류	ㅇ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새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와 함께 '공고일 이후 발급된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경력 인정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별지서식 제8호 참고)**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9.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1부 : 필수서류(전공분야 표시) ☞ **전형위원 제척·기피, 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졸업, 재학, 수료) 각 1부 ㅇ **(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구 분	내 용
10. 주민등록 초본 1부 : 필수서류	ㅇ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 기재**되도록 하며,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발급(또는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개명**한 응시자의 경우, **개명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11.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 면제 해당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증빙 용도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본인은 산업통상부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행정주사(일반임기제 6급) / 노무행정		
응시자격		자격증(2호)		
※응시번호	**노무 -**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국적명*) □ 해당없음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휴대전화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응 시 표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행정주사(일반임기제 6급) / 노무행정	
응시자격		자격증(2호)	
※응시번호	**노무 -**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산업통상부 인사팀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코드 기재

행정주사(일반임기제 6급) 노무 ☞ <별지서식 제1호>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택1**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안내 등 활용)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일반임기제 6급(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거나, 전자수입인지를 인쇄하여 응시원서 바로 뒤에 첨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2명의 미성년자가 확인되어야 함)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응시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분야	노무행정	응시자격요건	자격증(2호) 공인노무사	성명	

나.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00.00.00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휴직)	과장 (4급)		주당 근무시간 (예-주40시간)
	○○○○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휴직)	과장 (4급)		주당 근무시간 (예-주40시간)

다.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휴직)	과장 (4급)		주당 근무시간 (예-주40시간)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수상 연월일
		'00.00.00		000 학사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직업상담사 2급	'00.00.00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자격증(2호)

③ 응시자격요건 : 「공인노무사법」 제4조에 따른 **공인노무자 자격 취득 내역 및 경력 내역 작성**

【 응시자격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다만,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유의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만 기재

(예. 노무행정 분야 경력 요건 중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3년의 경력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4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도 제출서류 제출하고,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응시자격 충족 이후 경력을 기재하고,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학위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만 기재

- 전공·취득(예정)일·학위종류를 반드시 기재하고 학사-석사-박사 순으로 작성(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 (관련전공) 법학, 행정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노동(노사)관련학

※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26.10.23.)을 기준으로 취득한 학위만 인정**

자격증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만 기재(직업상담사)

- 자격증명·자격증번호·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실적은 증빙서류로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글씨크기 등은 작성자가 적절히 조절하여 워드프로세서 혹은 한글프로그램으로 여러장 작성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2026. . .

응시자 : (인)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총 6매 이내)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2026. . .

응시자 : (인)

<별지서식 제5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5.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산업통상부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자격 확인)	**자격, 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8호> (예시)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사항	근무기간(연,월,일)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자세히)	주당 근무시간	비고
	부터	까지					
	(예시) '12.6.30	'14.7.1	법무부 (IT부서)	부서장 (차장)	AI 플랫폼 구축 등	주 40시간	

제외기간	제외기간	제외사유
	(예시) `00.00.00. ~ `00.00.00.	(예시) 육아휴직 등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발급자			
담당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인사부서 연락처	전화: e메일:		

기관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직 인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위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가능

※ **근무기간(연월일)·주당 근무시간·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력증명서 제출 시 **경력불인정**